

예 산 총 칙

200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24,484,774	18,734,543
일반회계	550,840,737	16,525,222
특별회계	73,644,037	2,209,321
공기업특별회계	65,772,567	1,973,177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7,492,860	824,786
하수도사업특별회계	26,730,600	801,918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11,549,107	346,473
기타특별회계	7,871,470	236,144
강릉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	60,200	1,806
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319,628	9,589
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	2,953,264	88,598
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,706,308	81,189
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	1,270,054	38,102
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	540,650	16,220
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특별회계	21,366	641

제 2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08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별첨 "계속비사업 이월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조서는 별첨 "사고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,979,592 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09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1,700,000 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